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명령미이행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선된 1회용품 규제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춰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정 (제6조)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규모 확대
 - 식품위생업 : 객석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매 장 : 매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숙박업소 : 객실 30실 이상 ⇒ 객실 7실 이상으로 확대
 -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규정 ⇒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 미이행자 과태료부과액 조정
 - 최 하 : 300천원 ⇒ 2,000 천원
 - 최 고 : 3,000천원 ⇒ 3,000 천원

3. 검토보고

-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1999년 3월 24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조치 명령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규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제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